##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25

발의연월일: 2024. 8. 29.

발 의 자:조계원·정진욱·황정아

문금주・조 국・조인철

오세희 • 주철현 • 양부남

양문석 • 민형배 • 윤준병

허 영·박희승·이재관

강준현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성된 지방자치단체·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전담기관 소속으로 지역협업위원회를 두어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지역발전과 대학혁신을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 관과 지역협업위원회를 시·도뿐만 아니라 시·군·구 단위로도 그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, 지역협업위원회에 해당 지역 산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 록 할 필요가 있음. 이에 전담기관 및 지역협업위원회를 시·군·구별로도 설치·운영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, 지역협업위원회에 해당 지역의 산 업계대표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,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 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1조, 제21조의2 신설 등).

#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중 "협업체계"를 "협업체계(이하 "협업체계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"를 "협업체계"로, "전 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"를 "전담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을 시·도별 및 시·군·구(지방대학이 소재한 시·군·구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별로 지정하여야 하며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지역협업위원회) ①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소속으로 시·도에 시도협업위원회(이하 "시도협업위원회"라 한다)를 두고, 시·군·구에시군구협업위원회(이하 "시군구협업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시도협업위원회 및 시군구협업위원회(이하 "지역협업위원회"라

한다)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해당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.

- ③ 지역협업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고등교육기관의 장, 공공기관의 장 및 산업계대표 등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시군구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협업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- ④ 그 밖에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제3항 중 "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"을 "전담기관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1조(대학과 지역의 협업) ① 제21조(대학과 지역의 협업) ① -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.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 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-협업체계(이하 "협업체계"라 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교육부장관은 <u>제</u>1항에 따른 ② -----협업체계----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 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--전담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, 해 라 한다)을 시·도별 및 시· 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 군・구(지방대학이 소재한 시 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 ·군·구에 한정한다. 이하 같 로 지급할 수 있다. 다)별로 지정하여야 하며-----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・ ③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 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항을 심의・의결하기 위하여 령령으로 정한다.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

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 자치단체, 고등교육기관, 공공 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 성된 위원회(이하 "지역협업위 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④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 (이하 "지역협업위원회의 장"이라 한다)은 해당 지역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에고등교육기관의 장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·운영,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삭 제>

<삭 제>

제21조의2(지역협업위원회) ① 각
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
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
위하여 전담기관 소속으로 시
·도에 시도협업위원회(이하
"시도협업위원회"라 한다)를 두
고, 시·군·구에 시군구협업위원회"
원회(이하 "시군구협업위원회"

제23조(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 제23조(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 정의 효과 등) ①・② (생 략)

③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내 고등교 육기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시도협업위원회 및 시군구 협업위원회(이하 "지역협업위 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해 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된다. 다만, 지방자치 단체의 장 외에 해당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 원장이 될 수 있다.

③ 지역협업위원회는 해당 지 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고등교육기관의 장, 공공기 관의 장 및 산업계대표 등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시군구협업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협업위 원회의 <u>위원이 된다.</u>

④ 그 밖에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 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정의 효과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
(3)	

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	전담기관
<u>관</u> 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정	
한다.	